

증치세 미공제매입세액 환급의 신규 정책 시행 — 주요 변경사항 개괄

2025.08

Issue 11

개요

제 20 회 삼중전회에서 제시한 “증치세 미공제매입세액 환급 정책과 공제 사슬 개선”에 대한 개혁 임무 실행의 요구사항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해, 2025 년 8 월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재정부, 세무총국의 기말 증치세 미공제매입세액 환급 정책 개선에 관한 공고》¹(재정부, 세무총국 공고[2025]7 호)(이하 “7 호 공고”라 함)를 발표하여, 2025 년 9 월 증치세 과세 신고기간부터 조건에 부합하는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말 증치세 미공제매입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재세 시스템 개혁을 심화시키고 고품질의 경제 발전을 지탱하는 데 있어 강력한 뒷받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재세징수관리 관련 보충 문건인 《국가세무총국의 기말 증치세 미공제매입세액 환급 처리 관련 징수관리 사항에 대한 공고》²(국가세무총국 공고[2025]20 호)(이하 “20 호 공고”라 함)와 공식적인 해설이 발표되었습니다. 20 호 공고는 기말 증치세 미공제매입세액 환급에 관한 징수관리 사항에 대해서 한층 더 규정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해설은 구체적인 Q&A 와 예시를 통해 7 호 공고와 20 호 공고의 주요 내용을 정리 및 해설하여 납세자들이 정책의 핵심 요점을 보다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 호 공고와 20 호 공고는 모두 2025 년 9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Newsflash 에서는 증치세 미공제매입세액 환급에 대한 신규 정책의 주요 내용과 관련 영향을 검토하고 PwC 의 관찰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상세 내용

2025 년 9 월 증치세 과세 신고기간 이후, 조건에 부합하는 증치세 일반납세자는 규정에 따라 주관 세무기관에 기말 증치세 미공제매입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호 공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유형	적용 조건 및 범위		미공제매입세액 계산 공식		
“제조업”, “과학연구 및 기술서비스업”,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서비스업”, “생태 보호 및 환경정비업”의 납세자(이하 “제조업 등 4개 산업의 납세자”라 함)	(一) 납세 신용등급 A 급 또는 B 급인 경우 (二) 환급 신청 전 36 개월 기간 동안 미공제매입세액 환급 편취, 수출 환급 편취 또는 증치세 전용계산서 허위 발행 사실이 없는 경우 (三) 환급 신청 전 36 개월 기간 동안 탈세로 인해 세무기관으로부터 2 회 이상 처벌 받은 적이 없는 경우 (四) 2019 년 4 월 1 일부터, 증치세 즉시 부과 즉시 환급(즉징즉퇴), 선정 수 후환급(선징후퇴) 정책을 적용받지 않은 경우로서 본 공고에 별도 규정된 경우는 제외(현행 정책 유지)	《국민경제산업분류》에서의 “제조업”, “과학연구 및 기술서비스업”,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서비스업”, “생태 보호 및 환경정비업”의 산업에 종사하여 발생한 증치세 매출액이 전체 증치세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할 것	증치세 매출액은 납세신고 매출액, 조사보충 매출액, 납세평가 조정 매출액 등을 포함하며, 증치세 차액징수 정책 적용 시 차액 전 금액 기준으로 결정(현행 정책 유지) 매출액과 선수금 비중은 납세자의 환급 신청 전 연속 12 개월의 매출액과 선수금에 따라 계산하여 확정. 환급 신청 전 영업기간이 12 개월 미만이고 3 개월 이상인 경우, 실제 영업기간의 매출액과 선수금에 따라 계산하여 확정	환급 가능 미공제매입세액 = 당기 기말 미공제매입세액 × 매출세액 구성 비율 × 100%	매입세액 구성 비율: 2019 년 4 월부터 환급 신청 전 과세기간까지 이미 공제된 증치세 전용계산서, 해관 수입 증치세 전용 납부서, 세금완납증빙, 자동차판매 통합계산서, 유료도로 통행료 증치세 전자 보통계산서, 전자 계산서(항공운송 전자항공권 여정서), 전자 계산서(철도 전자승차권) 등 증치세 과세 증빙(이하 “7 가지 증치세 과세 증빙”이라 함)에서 명시한 증치세 세액이 같은 기간 이미 공제된 전체 매입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부동산 개발경영업 납세자	(一) 납세 신용등급 A 급 또는 B 급인 경우 (二) 환급 신청 전 36 개월 기간 동안 탈세로 인해 세무기관으로부터 2 회 이상 처벌 받은 적이 없는 경우 (三) 2019 년 4 월 1 일부터, 증치세 즉시 부과 즉시 환급(즉징즉퇴), 선정 수 후환급(선징후퇴) 정책을 적용받지 않은 경우로서 본 공고에 별도 규정된 경우는 제외(현행 정책 유지)	《국민경제산업분류》에서의 “부동산 개발경영” 사업에 종사하여 발생하는 증치세 매출액과 선수금이 전체 증치세 매출액과 선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할 것; 2019 년 3 월 31 일 기말 증치세 미공제매입세액에 비해, 환급 신청 전 연속 6 개월 기간 동안(분기별로 납세하는 경우 연속 두 분기, 이하 같음) 기말에 신규 증가한 미공제매입세액이 모두 0 보다 크고 6 개월째(분기별로 납세하는 경우, 2 분기, 이하 같음)의 기말 신규 증가 미공제매입세액이 50 만 위안 이상 일 것	매출액과 선수금 비중은 납세자의 환급 신청 전 연속 12 개월의 매출액과 선수금에 따라 계산하여 확정. 환급 신청 전 영업기간이 12 개월 미만이고 3 개월 이상인 경우, 실제 영업기간의 매출액과 선수금에 따라 계산하여 확정	환급 가능 미공제매입세액 = 당기 기말 미공제매입세액 중 2019 년 3 월 31 일 기말 미공제매입세액보다 새로 증가한 미공제매입세액 × 매출세액 구성 비율 × 60%	매입세액 구성 비율: 환급 신청 전 1 과세기간의 당해연도 1 월부터 환급 신청 전 과세기간까지 이미 공제된 7 가지 증치세 과세증빙에서 명시한 증치세 세액이 같은 기간 이미 공제된 전체 매입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제조업 등 4개 산업과 부동산 개발경영업의 납세자 이외의 기타 납세자(이하 “기타 납세자”라 함)	(一) 납세 신용등급 A 급 또는 B 급인 경우 (二) 환급 신청 전 36 개월 기간 동안 탈세로 인해 세무기관으로부터 2 회 이상 처벌 받은 적이 없는 경우 (三) 2019 년 4 월 1 일부터, 증치세 즉시 부과 즉시 환급(즉징즉퇴), 선정 수 후환급(선징후퇴) 정책을 적용받지 않은 경우로서 본 공고에 별도 규정된 경우는 제외(현행 정책 유지)	환급 신청 전 연속 6 개월 기말 미공제매입세액이 모두 0 보다 크고, 6 개월째 기말 미공제매입세액이 환급 신청 전 1 과세기간의 전년도 12 월 31 일 기말 미공제매입세액에 비해 신규 증가한 미공제매입세액	환급 가능 미공제매입세액 = 당기 기말 미공제매입세액 중 환급 신청 전 1 과세기간의 전년도 12 월 31 일 기말 미공제매입세액보다 새로 증가한 미공제매입세액으로서 1 억 위안을 초과하지 않은 부분 × 매출세액 구성 비율 × 60% + 1 억 위안	매입세액 구성 비율: 환급 신청 전 1 과세기간의 당해연도 1 월부터 환급 신청 전 과세기간까지 이미 공제된 7 가지 증치세 과세증빙에서 명시한 증치세 세액이 같은 기간 이미 공제된 전체 매입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50 만 위안 이상 일 것		초과 부분×매입세액 구성 비율×30%	
--	--	---------------------	--	-------------------------	--

유의해야 할 것은, 7 호 공고는 기말 미공제매입세액 환급을 적용하는 납세자 유형에 대해 상응하는 조정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 증치세 미공제매입세액 전액 환급 허용의 적용 범위를 좁혔습니다. 《재정부, 세무총국의 기말 증치세 미공제매입세액 환급 정책 시행 강화에 관한 공고》³(재정부, 세무총국 공고[2022]14 호)(이하 “14 호 공고”라 함)와 《재정부, 세무총국의 증치세 미공제매입세액 전액 환급 정책 산업 범위 확대에 관한 공고》⁴(재정부, 세무총국 공고[2022]21 호)에 따르면, 원래 미공제매입세액 전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제조업”, “과학연구 및 기술 서비스업”, “전력, 열, 가스, 물 생산 및 공급업”,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 서비스업”, “생태보호와 환경정비업”, “교통운송, 창고보관 및 우편업”, “도매 및 소매업”, “농업, 임업, 축산업 및 어업”, “숙박 및 요식업”, “주민서비스,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교육”, “보건업 및 사회복지사업”, “문화,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업”의 납세자와 영세기업이 포함되었는데, 현재 7 호 공고에서는 “제조업”, “과학연구 및 기술 서비스업”,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 서비스업”, “생태보호와 환경정비업” 4 개 산업의 증치세 일반납세자에 한하여 월별로 관할 세무기관에 기말 미공제매입세액의 전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 및 허용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개발 경영 산업” 납세자가 적용받는 기말 미공제매입세액 환급에 대한 판단 기준과 구체적인 요건이 새로 추가되었으며 환급 비율은 60%입니다. 아울러, 부동산 산업의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특수 경영상황을 감안하여 판정 비중을 계산할 때 “선수금” 요소를 추가하여 정책의 맞춤형 및 실무처리의 합리성을 보장하였습니다.
- “기타 납세자”의 경우 미공제매입세액 금액의 크기에 따라 60% 및 30%의 단계별 환급 비율을 설정하였으며, 증가분 미공제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기준금액을 당기 기말 미공제매입세액이 “2019 년 3 월말에 비해 새로 증가한 기말 미공제매입세액”에서 “환급 신청 이전 과세기간의 직전연도 12 월 31 일 기말 미공제매입세액에 비해 새로 증가한 미공제매입세액”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증가분 계산 기준금액을 조정한 것은 기업의 최근 투자 확대 및 재생산에 대한 실제 수요에 더욱 부합되며 경영 활동의 고효율적 추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한편, “부동산 개발 경영 산업의 납세자”와 “기타 납세자” 2 가지 납세자에 대해서 7 호 공고는 기말 미공제매입세액 환급의 적용 문턱, 즉 “환급 신청 전 6 개월 연속으로 기말 미공제매입세액이 모두 0 이상이며 6 개월째 기말에 새로 증가한 미공제매입세액이 50 만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는 적용 조건을 다시 설정했습니다. 이는 정확한 기준 선별을 통해 자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수 있고 안정성을 갖춘 기업을 지향하도록 하고, 세수자원 배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7 호 공고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1) 납세자가 같은 산정 기간 동안 부동산 개발 경영 사업의 증치세 매출액 또는 선수금을 취득할 뿐만 아니라 기타 사업 증치세 매출액을 취득하고, 이와 더불어 부동산 개발 경영 사업에서 발생하는 증치세 매출액+선수금이 전체 증치세 매출액+선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즉, 납세자가 “제조업 등 4 개 산업 납세자”와 “부동산 개발 경영 산업 납세자”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기말 미공제매입세액 환급을 신청할 때 “부동산 개발 경영 산업 납세자”에 따라 미공제매입세액 환급을 신청 및 처리해야 합니다. (2) “부동산 개발 경영 산업 납세자”가 7 호 공고에서 규정한 새로 증가한 기말 미공제매입세액 금액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문건 중 “기타 납세자”에 대한 규정에 따라 기말 미공제매입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호 공고는 한편으로는 납세자에게 세수우대혜택을 자체 선택할 권리를 부여한다는 14 호 공고에서의 규정을 유지하였습니다. 즉, 납세자가 이미 환급받은 세금 전액을 다시 국고로 반환하고 미공제매입세액 환급 또는 즉시 부과 즉시 환급(즉징즉퇴), 선징수 후환급(선징후퇴)의 정책을 다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업은 경영 변화에 따라 조세 전략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14 호 공고에서는 납세자가 2022 년 10 월 31 일 전까지 이미 환급받은 미공제매입세액 전액을 한꺼번에 반환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했었는데, 7 호 공고는 정책적으로 시일 제한의 굴레를 걷어냄으로써 실제 상황에 더욱 잘 대응하게 되고 합리성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7 호 공고는 여러 가지 세수우대혜택 간의 전환에 대해서 “36 개월 기간 동안 변경 불가”라는 제한을 새로 추가했는데, 이는 정책 적용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기업이 빈번하게 혜택 적용 방식을 교체하여 징수관리의 위험을 가져다 주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므로, 납세자는 자신의 실제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연구개발 투입의 성숙기에 처해 있고 자금 점용에 압박을 받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 미공제매입세액 환급을 우선 선택하여 자금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향후 프로젝트가 구현됨에 따라 경영 소득을 안정적으로 취득한 후 즉시 부과 즉시 환급(즉징즉퇴), 선부과 후환급(선징후퇴) 정책의 적용 조건을 충족하면 이미 환급받은 세금을 반환한 후 혜택을 전환할 수 있으며, 정확한 선택을 통해 세무 비용 최적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20 호 공고는 기본적으로 《국가세무총국의 기말 증치세 미공제매입세액 환급 처리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⁵(국가세무총국 공고[2019]20 호)와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공제 증빙 인증 확인 기한 취소 등 증치세 징수관리 문제에 관한 공고》⁶(국가세무총국 공고[2019]45 호)에서 규정한 기말 증치세 미공제매입세액 환급 처리 관련 징수관리 사항을 유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환급(공제)신청서》와 《미공제매입세액 환급액 반환 신청서》를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핵심 요약

중국의 증치세 미공제매입세액 환급 제도는 여러 차례의 조정과 심화개혁을 거쳐 보유분 미공제매입세액 환급에서 증가분 미공제매입세액 환급으로 향하는 중점 전환을 이루었고, 일부 산업 적용에서부터 전체 산업 적용까지 범위가 확장되었으며, 정책의 성격이 단계적 지원으로부터 제도적 안배로 바뀌는 핵심적인 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뚜렷한 유연성, 현저한 규모의 효과, 업종별 차별화 및 조화, 명확한 정책 지향이라는 선명한 특징을 보여주었습니다.

금번 발표된 7 호 공고와 20 호 공고는 기존의 증치세 미공제매입세액 환급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는 기초하에 실무상 난제와 정책 효율성 강화에 좀더 신경을 쓰고 효율적이고 편리한 세금 환급 처리 절차를 동시에 마련함으로써, 세수 징수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전체 사슬의 조세 위험 방지 매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유의해야 할 것은, 두 공고는 모두 2025 년 9 월 1 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입니다. 관련 기업들이 신규 정책의 내용을 되도록 빨리 이해하고 내부 컴플라이언스 관리를 강화하며, 재세 전략 구조를 조정하고 전반적인 운영 계획을 최적화하여 정책으로 인한 이점을 기업의 실질적 발전 성과로 전환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주석

1. 《재정부, 세무총국의 기말 증치세 미공제매입세액 환급 정책 개선에 관한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2025]7 호)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2416/c5242450/content.html>
2. 《국가세무총국의 기말 증치세 미공제매입세액 환급 처리에 관한 징수관리 사항에 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2025]20 호)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12/c5242455/content.html>
3. 《재정부, 세무총국의 기말 증치세 미공제매입세액 환급 정책 시행 강화에 관한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2022]14 호)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2416/c5202030/content.html>
4. 《재정부, 세무총국의 증치세 미공제매입세액 전액 환급 정책 산업 범위 확대에 관한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2022]21 호)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2416/c5202014/content.html>
5. 《국가세무총국의 기말 증치세 미공제매입세액 환급 처리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2019]20 호)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12/c5194871/content.html>
6.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공제 증빙 인증 확인 기한 취소 등 증치세 징수관리 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2019]45 호)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12/c5194904/content.html>

자세한 문의는 PwC China KBD (Korean Business Desk)에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PwC China KBD CONTACT LIST

대표 김도현 **Partner** (86) (21) 2323-3350, dh.kim@cn.pwc.com
북경 (회계감사 & Tax) 윤석 **Director** (86) (10) 6533-3219, dan.s.yoon@cn.pwc.com
 (회계감사 & Tax) 유지영 **Director** (86) (10) 8553-1114, jiyoung.j.yu@cn.pwc.com
 (회계감사 & Tax) 김원택 (86) (10) 6533-6416, won-taek.w.kim@cn.pwc.com
상해 (회계감사 & Tax) 신영직 **Partner** (86) (21) 2323-1080, jake.shin@cn.pwc.com
 (회계감사 & Tax) 최영기 (86) (21) 2323-8174, younggi.y.choi@cn.pwc.com
 (TP) 최영선 (86) (21) 2323-1331, chris.choi@cn.pwc.com
홍콩 우종욱 **Director** (852) 2289-1243, jongwook.woo@hk.pwc.com

참고로, 저희의 지난호 뉴스플래시(영문/중문/국문)는 아래 링크된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wccn.com/en/services/tax/publications/taxlibrary-chinatax-kr.html>



全维度中国税务资讯平台“税界”3.0全新上线

不止于随身知识导航，更是你的专属税务智囊



苹果手机下载
(iOS 10以上)



安卓手机下载
(Android 6.0以上)

- 安卓手机也可以在腾讯应用宝中搜索“税界”进行下载
- “税界”网页版链接: <https://shuijie.pwcconsultantssz.com>



文中所称的中国指中国内地，不包括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

本刊物中的信息仅供一般参考之用，而不可视为详尽的说明。相关法律的适用和影响可能因个案所涉的具体事实而有所不同。在有所举措前，请确保向您的普华永道客户服务团队或其他税务顾问获取针对您具体情况的专业意见。本刊物中的内容是根据当日有效的法律及可获得的资料于 2025 年 8 月 29 日编制而成的。

这份中国税务/商务新知由普华永道中国税收政策服务编制。**普华永道中国税收政策服务**是由富经验的税务专家所组成的团队。团队致力搜集、研究并分析中国内地、香港地区和新加坡现有和演变中的税务及相关商务政策，目的是协助普华永道税务部专业人员提供更优质的服务，并通过与有关的税务和其它政策机关、学院、工商业界、专业团体、及对我们的专业知识感兴趣的人士分享交流，以保持我们在税务专业知识领域的领导地位。

如欲了解更多信息请联系：

马龙
电话: +86 (10) 6533 3103
long.ma@cn.pwc.com

有关最新商业问题的解决方案，欢迎浏览普华永道 / 罗兵咸永道之网页: <http://www.pwccn.com> 或 <http://www.pwchk.com>

www.pwccn.com

© 2025 普华永道。版权所有，未经普华永道允许不得分发。普华永道系指普华永道网络中国成员机构，有时也指普华永道网络。详情请进入 www.pwc.com/structure。
每家成员机构各自独立，并不就其他成员机构的作为或不作为负责。